명곡의과학연구소 규정(4-2-4)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 (명칭 및 소재지) 본 연구소는 명곡의과학연구소 (이하"연구소"라 함)이라 칭하며 건양대학교 내에 둔다.
- 제2조 (목적) 연구소는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연구를 수행하여 생명과학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건강 및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 (사업)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연구
 - 2. 외부 관련 기관의 위탁 연구
 - 3. 국내외 공동연구
 - 4.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비 관리
 - 5. 학술회의,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및 경비지원
 - 6. 간행물 발간
 - 7.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 2 장 조직 및 구성원

- 제4조 (조직)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운영위원회
 - 2. 실험연구부, 연구지원부
 - 3. 융합연구센터(신설 2017.11.1.)
- 제5조 (임원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 - 1. 연구소의 장(이하 "소장"이라 함)
 - 2. 운영위원회의 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함)
 - 3. 융합연구센터의 장(이하 "센터장"이라 함) (신설 2017.11.1.)
 - 4. 운영위원회의 간사(이하 "간사"라 함) 및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함)
- 제6조 (임원의 선임) 임원의 선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소장 : 건양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 - 2. 위원장 : 건양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 - 3. 센터장 :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(신설 2017.11.1.)
 - 4. 간사 및 위원 : 위원 및 간사는 건양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7조 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2.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위촉하며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 제8조 (임원의 책무) 임원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 - 2.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의 유고시 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 - 3. 센터장은 융합연구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, 대학중점연구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융합연구센터에서 담당한다.(신설 2017.11.1.)
- 제9조 (부원의 임명) 제4조 제2호의 실험연구부와 연구지원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원을 둘 수 있다.
 - 1. 의학과 전임교원
 - 2. 연구교수
 - 3. 연구원
 - 4. 연구조교
 - 5. 직원
- 제10조 (고문의 선임) 고문은 의과학 분야의 국내외 저명인사로서 필요시 소장의 추천과 운영 위원회의 의결 후 총장이 위촉한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11조 (운영위원회의 구성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.

- 1. 운영위원회는 위원장, 간사 및 위원으로 구성된다.
- 2. 소장은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참석한다.
- 3.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제12조 (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)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한다.

- 1.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운영
- 2. 연구소의 예산편성 및 결산
- 3.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
- 4. 명곡학술연구비의 선정 및 관리
- 5. 기타 연구소의 운영과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
- ②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13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- 1. 본교의 지워금
- 2. 연구기금 및 연구사업 수익금
- 3. 외부기관의 지원금
- 4. 기타 수입

제14조(회계년도)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15조(예산 및 결산) 소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총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의 사업 결과 보고서와 결산 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6조(감사) 연구소의 수입, 지출은 필요시 감사를 받을 수 있다.

제17조(재산의 귀속) 연구소의 모든 재산은 건양대학교에 귀속된다.

제 5 장 규정 개정과 준용

제18조(준용) 기타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양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운영규정 및 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제19조(규정 개정) 연구소의 규정개정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6장 보 칙

제20조(규정개정)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위원 1/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